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단3255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피 고 1. 의료법인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이

담당변호사 김은정

변 론 종 결 2020. 9. 10.

판 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의료법인 B은 18,242,470원, 피고 C은 6,151,252원, 피고 D은 6,036,21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의료법인 B은 송달장소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주소지에서 F병원을, 피고 D은 주소지에서 G병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표 기재 피보험자들(이하 ‘피보험자들’)과 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서는 피보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손상 등으로 인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진단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진단비 전액을 피보험자들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들에게 실손의료비로 위 진단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보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진단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상당액(별표 편취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피보험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바, 원고는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별표 편취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의 소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즉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

다. 먼저 원고가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서 피보험자들에게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갑 2,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손상 중 퇴행성 및 만성 손상 이외의 것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점을 알 수 있는바, 피보험자들이 퇴행성 및 만성 손상 이외의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손상과 관련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서 피보험자들에게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인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한편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피보험자들이 다수이고 피보험자별 보험금액이 소액이어서 원고가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고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판사 정창근

경원

병원명	사고번호	피보험자	생년월일	성별	진단코드	진단명	구분	입원시작일	입원종료일	MRI 촬영년	환자부담금 ①	MRI진단료 비급여 ②	편익금액 ②-①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21212	20121219	2012	70,716	430,000	359,284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21218	20121218	2012	70,716	430,000	359,284
				남성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통원	20121231	20121231	2012	70,716	430,000	359,284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112	20130113	2013	101,289	430,000	328,711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통원	20130115	20130115	2013	101,289	430,000	328,711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117	20130126	2013	101,289	430,000	328,711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117	20130126	2013	101,289	430,000	328,711
				여성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306	20130316	2013	101,289	430,000	328,711
				남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311	20130312	2013	101,289	430,000	328,711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410	20130411	2013	101,289	860,000	758,711
				남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통원	20130620	20130620	2013	101,289	430,000	328,711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702	20130703	2013	101,289	430,000	328,711
				남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705	20130706	2013	101,289	430,000	328,711
				여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입원	20130808	20130809	2013	101,289	430,000	328,711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809	20130810	2013	101,289	430,000	328,711
				여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연 찢김	통원	20130823	20130823	2013	101,289	430,000	328,711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829	20130830	2013	101,289	430,000	328,711
				여성	S83.22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30926	20130926	2013	101,289	430,000	328,711
				여성	S83.22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1002	20131016	2013	101,289	430,000	328,711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입원	20131126	20131127	2013	101,289	430,000	328,711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40122	20140123	2014	103,244	450,000	346,756
				여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입원	20140307	20140308	2014	103,244	450,000	346,756
				남성	S83.50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입원	20140314	20140315	2014	103,244	450,000	346,756
				남성	S83.50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입원	20140318	20140324	2014	103,244	450,000	346,756
				여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입원	20140320	20140323	2014	103,244	450,000	346,756
				여성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40702	20140706	2014	103,244	450,000	346,756
				남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40717	20140718	2014	103,244	450,000	346,756

				남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40802	20140802	2014	103,244	450,000	346,756
				여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입원	20140830	20140831	2014	103,244	450,000	346,756
				여성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입원	20140926	20140927	2014	103,244	900,000	796,756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41209	20141222	2014	103,244	450,000	346,756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입원	20150407	20150408	2015	105,046	450,000	344,954
				여성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입원	20150710	20150713	2015	103,244	390,000	286,756
				남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입원	20151219	20151220	2015	103,244	450,000	346,756
				남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60222	20160222	2016	106,546	450,000	343,454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60411	20160411	2016	106,546	460,000	353,454
				여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입원	20160520	20160521	2016	106,546	450,000	343,454
				여성	S83.53	후십자인대의 파열	통원	20160531	20160531	2016	106,546	450,000	343,454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입원	20160714	20160716	2016	106,546	450,000	343,454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61210	20161220	2016	106,546	450,000	343,454
				여성	S83.21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70111	20170111	2017	108,496	450,000	341,504
				여성	S83.22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70213	20170218	2017	108,496	450,000	341,504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통원	20170630	20170630	2017	108,496	450,000	341,504
				남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통원	20170719	20170719	2017	105,520	450,000	344,480
				남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입원	20171006	20171011	2017	105,520	450,000	344,480
				남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통원	20171106	20171106	2017	105,520	450,000	344,480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통원	20171209	20171209	2017	105,520	300,000	194,480
				남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통원	20180419	20180419	2018	104,289	300,000	195,711
				남성	S83.22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80702	20180717	2018	104,289	450,000	345,711
				남성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20181103	20181103	2018	104,289	450,000	345,711
				여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통원	20190116	20190116	2019	103,270	450,000	346,730
				남성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통원	20190215	20190215	2019	103,270	450,000	346,730

18,242,470

사고번호	피보험자	생년월일	성별	진단코드	진단명	구분	입원시작일	입원종료일	MRI 촬영년	환자부담금 ①	MRI진단료 비급여 ②	편위금액 ③-①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통원	20120705	20120705	2012	89,469	450,000	360,531
			남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입원	20121112	20121113	2012	70,716	350,000	279,284
			남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308	20130309	2013	101,289	350,000	248,711
			남성	S83.53	후십자인대의 파열	통원	20130409	20130409	2013	101,289	350,000	248,711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통원	20130419	20130419	2013	101,289	350,000	248,711
			남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통원	20131122	20131122	2013	101,289	350,000	248,711
			남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입원	20140428	20140429	2014	103,244	400,000	296,756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입원	20140712	20140731	2014	103,244	350,000	246,756
			여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입원	20151214	20151215	2015	105,046	350,000	244,954
			여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통원	20160412	20160412	2016	106,546	350,000	243,454
			여성	S83.41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입원	20161130	20161216	2016	106,546	350,000	243,454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통원	20170222	20170222	2017	108,496	400,000	291,504
			여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입원	20170420	20170421	2017	108,496	400,000	291,504
			남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입원	20170504	20170505	2017	108,496	400,000	291,504
			여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입원	20180111	20180113	2018	104,289	400,000	295,711
			남성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입원	20180507	20180509	2018	104,289	400,000	295,711
			남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입원	20180514	20180524	2018	104,289	400,000	295,711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입원	20180605	20180609	2018	104,289	400,000	295,711
			남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입원	20180807	20180813	2018	104,289	400,000	295,711
			남성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입원	20181018	20181020	2018	104,289	400,000	295,711
			남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입원	20181224	20181229	2018	104,289	400,000	295,711
			여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입원	20190114	20190131	2019	103,270	400,000	296,730

6,151,252

변호번호	피보험자	생년월일	성별	진단코드	진단명	구분	입원시작일	입원종료일	MRI 촬영년도	환자부담금 ①	MRI진단료 비급여 ②	편위금액 ②-①
			여성	S83.7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통원	20110131	20110131	2011	91,948	350,000	258,052
			남성	S83.5	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한	입원	20110627	20110628	2011	91,948	350,000	258,052
			남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입원	20110826	20110827	2011	91,948	700,000	608,052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입원	20110901	20110903	2011	91,948	700,000	608,052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20202	20120222	2012	89,469	350,000	260,531
			남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통원	20130107	20130107	2013	101,289	350,000	248,711
			남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30817	20130923	2013	101,289	350,000	248,711
			남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통원	20131001	20131001	2013	101,289	400,000	298,711
			남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입원	20131021	20131101	2013	101,289	400,000	298,711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입원	20131202	20131203	2013	101,289	400,000	298,711
			남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입원	20150119	20150203	2015	105,046	400,000	294,954
			남성	S83.49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입원	20150202	20150203	2015	105,046	400,000	294,954
			남성	S83.43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입원	20150421	20150427	2015	105,046	400,000	294,954
			남성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50421	20150422	2015	105,046	400,000	294,954
			여성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입원	20150530	20150531	2015	105,046	400,000	294,954
			남성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입원	20160126	20160201	2016	106,546	400,000	293,454
			여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입원	20170208	20170211	2017	108,496	400,000	291,504
			여성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통원	20171206	20171206	2017	105,520	400,000	294,480
			남성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입원	20180508	20180512	2018	104,289	400,000	295,711

6,036,213

